



이 메일은 최진욱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2016년 07월 22일)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처리 결과 알림

신청번호	1AA-1607-141041
신청일	2016-07-21 14:51:05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인 이름	최진욱
주민(외국인)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010-3733-7613
주소	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B동604호
이메일	acech19@naver.com
공개여부	비공유
진행상황 통보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제목 감지기 설치 종류

민원내용 아파트세대 내의
1. 드레스룸,팬트리,알파룸,발코니에 차동식 감지기
설치 가능한지요?
2. 실외기실에 감지기 제외 가능한지요?
도면 첨부합니다.

처리 결과

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자	서주완 (044-204-6164)	민원인 신청번호	1AA-1607-141041
접수일	2016-07-21 16:12:2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607-321816
처리에정일	2016-08-09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6-07-22 11:34:23

처리결과(답변내용)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1AA-1607-14104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감지기 설치 종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아파트 세대내 드레스룸,팬트리,알파룸,발코니에 차동식 감지기 설치 가능한지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2항제5호가목[공동주택의 취침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의 범주에 대하여
감리자 및 관할소방서 민원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외기실에 감지기 제외 가능여부 :
=>실외기실에 창호가 있어, 감지기 설치에 따른 외기영향이 있는 경우 감지기 설치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담당자 : 서주완(연락처 : 044-204-6164), 이메일: seo1214joo@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처리과정 만족도조사 - 국민안전처 -

이미 만족도조사에 응모하셨을 경우 다시 응모하셔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족도 평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필수)